

국토교통부령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토교통부 (녹색도시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‘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’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소공원
· 어린이공원에서 소규모 도서관(1층, 33m² 이하)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뿐만 아니라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어린이공원에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 및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“편익시설”을 각각 “교양시설 중 도서관(1층, 33㎡ 이하), 편익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경로당으로서”를 “경로당과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으로서”로, “경로당은”을 “경로당과 어린이집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9호 본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어린이집과 유치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“규정”을 “규정과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.	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 원시설은 조경시설, 휴양시설 중 긴 의자, 유희시설, 운동시 설 중 철봉·평행봉 등 체력 단련시설, <u>편익시설</u> 중 음수장 · 공중전화실에 한할 것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양시설 중 도서관</u> <u>(1층, 33m² 이하), <u>편익시설</u></u> -- -----
3.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 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, 휴양 시설(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), 유희시설, 운동시 설, <u>편익시설</u> 중 화장실·음수 장·공중전화실로 하며, 어린 이의 이용을 고려할 것. 다만, 휴양시설 중 <u>경로당으로서</u> 건 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 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양시설 중 도서관(1층, 3</u> <u>3m² 이하), <u>편익시설</u></u> ----- -----. ----- <u>경로당과 교양시설</u> <u>중 어린이집으로서</u> ----- -----

행일(2005년 12월 30일을 말한다)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증축(증축되는 면적은 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연면적 이하이어야 한다)·재축·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.

4. ~ 1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

① (생략)

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9.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 :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(묘지공원을 제외한다). 다만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

-----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-----

-----.

4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----- 어린이집과 유치원 -----

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. 10.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<u>규정</u>에 따른 학교(이하 이 호에서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지(校地)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.·다. (생략) 11.·12. (생략) ③ ~ ⑨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0. -----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---- <u>규정과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11.·1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
--	---